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05
------	------

2021. 06. 21.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10월 14일, 송명화 의원(찬성자 17명)

나.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6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1.06.21.)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송명화 의원)

1. 제안이유

- 주민생활 안정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하수도요금을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요금 결정에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상 조문체계 및 조문 문구 등을 수정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를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 로 한다(안 제3조제1항)
- 나. “시장이” 를 “시가” 로 한다(안 제3조제2항)
- 다. 상하수도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안 제3조)
- 라. “서울특별시” 를 “시” 로 한다(안 제11조제1항)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공공요금인 상·하수도 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요금 결정에 객관성과 민주성을 담보하고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과 현황

- 물가대책위원회는 ▶교통요금(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도시철도 요금), ▶도시가스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기구임.

- 위원회 위원은 총 30명 이내에서 서울시의원 3명과 당연직(공무원) 위원 5명을 포함하여 물가관련 단체와 소비자대표, 법조인, 언론인, 대학교수, 전문가를 위촉하여 2년 임기로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위촉직 위원의 임기만료(2021.2.10.) 후 후임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고, 위원회 회의도 2018년 택시요금 기본요금 조정에 관한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발생하지 않아 개최되지 않았음.
-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장기간 위원회를 구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가안정에 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음.

< 2015년 이후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이력 >

개 최 일	안 건 명	회 의 결 과
2015. 6.12	지하철과 버스요금 조정(1차)	보류 (메르스 여파)
2015. 6.18	지하철과 버스요금 조정(2차)	원안가결 (찬성 12, 반대 8)
2015.10.23	도시가스요금 조정 심의(1차)	보류(검토시간 불충분, 대중교통 요금 인상 여파)
2015.12.14	도시가스요금 조정 심의(2차)	원안가결 (찬성 11, 반대 1)
2018.12.26	택시요금 기본요금 조정	원안가결 (찬성 9, 반대 8)

나. 상·하수도 요금의 결정체계

- 서울시 상수도와 하수도에 대한 관리와 운영은 상수도사업본부와 물순환안전국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분리하여 운용되고 있음.

- 상·하수도 요금은 「수도법」과 「하수도법」에 따라 각각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요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상수도 요금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이하 “수도조례”), 하수도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하수도조례”)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 상·하수도 요금을 변경할 때에는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개별 조례를 개정하고 있음.
- 반면에,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은 사업부서에서 요금조정안을 마련하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음.

〈 대중교통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의 조정 절차 〉



- 상·하수도 요금은 총괄원가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과 함께 ▶ 상·하수도관의 구경별, ▶ 업종별, ▶ 누진단계별로 복잡한 체계를 거쳐

산정되고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바, 시의회 심의기간 동안 이러한 사항을 모두 심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와 같은 이유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에서는 상·하수도 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하고 있음.
- 개정안과 같이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상·하수도 요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 상·하수도 요금 결정에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한편, 「수도조례」는 최근 ▶상수도요금의 연차별(2021.7.~2024.1.) 인상, ▶급수업종의 간소화¹⁾, ▶누진요금 부과방식 개선²⁾을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5.20.), 급수업종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하수도조례」도 올해 8월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임.
- 따라서 현재의 상·하수도 요금조정이 완료된 이후부터 발생하는 요금 조정부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1) 급수업종을 기존 4개 업종(가정용, 옥탕용, 공공용, 일반용)에서 3개 업종(가정용, 옥탕용, 일반용)으로 변경하도록 개정(2022.1.1.시행)됐음.

2)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 옥탕용 요금의 누진제는 2022년부터 폐지)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현재 하수도 요금의 조정이 예정 중이므로 다음 요금조정부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시행일을 조정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현재 하수도 요금의 조정이 예정 중이므로 상·하수도 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안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조정함(부칙).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1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905
----------	---------

제안년월일 : 2021년 06월 21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현재 하수도 요금의 조정이 예정 중이므로 다음 요금조정부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시행일을 조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현재 하수도 요금의 조정이 예정 중이므로 상·하수도 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안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조정함(안 부칙).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후단 <u>신설</u>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u>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u>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이”를 “시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상수도 요금

4. 하수도 사용료

제1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를 “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u>서울특별시</u> 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p> <p>1. ~ 5. (생 략)</p> <p>② 위원회는 <u>시장이</u>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2.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3. (생 략)</p> <p>③ (생 략)</p> <p>제11조(심의안건제출) ① <u>서울특별시</u> 본청의 각 부서의 장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은 회의의 의안을 제출하고 그 제안설명을 한다.</p> <p>②·③ (생 략)</p>	<p>제3조(기능) ① -----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u> ----- -----.</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 <u>시가</u>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상수도 요금</u></p> <p>4. <u>하수도 사용료</u></p> <p>5. (현행 제3호와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심의안건제출) ① <u>시</u>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